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08562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9. 10. 30.

판결 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225,238원과 그중 193,104,808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8. 12.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2. 26. 접수 제34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에 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7. 2.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2. 21.부터 2018. 2.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8. 2. 20.,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억 원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D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피고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기한은 그 후 2019. 2. 20.로 변경되었다.

3) 피고 회사가 2018. 10. 23.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2. 20.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원금 1억 9,000만 원과 이자 3,104,808원 합계 193,104,8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에 의한 지연지연손해율은 2016. 2. 1.부터 연 10%로 정해져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항에서, 위 피고들이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비용으로 1,120,430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B은 2018. 12.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2. 26. 접수 제3468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룡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G공단, H단체,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225,238원(= 대위변제금 193,104,808원 + 대지급금 1,120,43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193,104,8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 B와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8. 12. 10.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인 2018. 10. 23. 피고 회사가 D은행에 대하여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개월가량이 경과한 2019. 2. 20. D은행에 합계 193,104,80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원고가 2019. 2. 20. D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반환방법과 범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사해행위가 매매예약인 경우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강균

별지